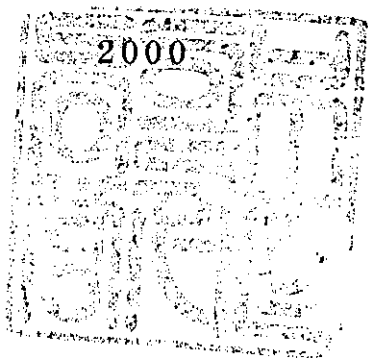


북한수첩



통일부

1999 CALENDAR

9	10	11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1 2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7 18 19 20 21 22 23	21 22 23 24 25 26 2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4 25 26 27 28 29 30	28 29 30	26 27 28 29 30 31

2000 CALENDAR

1	2	3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1 2 3 4 5	1 2 3 4	1
9 10 11 12 13 14 15	6 7 8 9 10 11 12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16 17 18 19 20 21 22	13 14 15 16 17 18 19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7 28 29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5	6	7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1 2 3	1	1 2 3 4 5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9 10 11 12 13 14 15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16 17 18 19 20 21 22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23 24 25 26 27 28 29	27 28 29 30 31
9	10	11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9 30 31	26 27 28 29 30	24 25 26 27 28 29 30

2001 CALENDAR

1	2	3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1 2 3	1 2 3	1 2 3 4 5 6 7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28 29 30 31	25 26 27 28	25 26 27 28 29 30 31	29 30
5	6	7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1 2	1 2 3 4 5 6 7	1 2 3 4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29 30 31	26 27 28 29 30 31

일 러 두 기

- ① 이 수첩은 북한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서 발간한 「북한개요2000」의 휴대용으로 발간하였다.
- ② 이 수첩에 수록된 각종 자료 및 도표는 「북한개요2000」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 ③ 북한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또는 「」안에 넣고 북한의 철자법에 따라 기술하였다.
- ④ 직접인용 표시가 없는 경우, 우리 한글맞춤법을 적용하였다.
- ⑤ 군사분야 등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기술하였다.
- ⑥ 자료편의 「북한헌법」은 북한에서 발표한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목 차

개 황

행정구역	6
주요현황	8
약 사	9

정 치

체제의 성격	12
조선노동당	14
최고인민회의	18
국방위원회	20
내 각	21
검찰소 · 재판소	23

군 사

정책기조 및 전략	25
4대 군사노선	25
군사 지휘체계	25
군사정책 변천과정	26
군사력 현황	27

외 교

외교정책 기조	29
외교정책 변천과정	29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구조	30
대UN 관계	31
남북한 외교활동 비교	32

경 제

경제체제 및 정책	34
경제관리 체계	35
경제계획 목표와 실적	36
재 정	37

전력 · 수송	38
식량 · 비료	39
대외무역	40
분야별 현황	41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	43

사회문화

평양특별시	46
주요도시	57
명승고적	60
명 절	62
남북한 생활용어 차이	63

대 남

기본목표 · 전략전술	66
대남사업기구 및 인물	66
통일의 원칙 · 방안	70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72
주요 대남제의	73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78

남북협력

교류협력	80
인도지원	81
이산가족	83
북한이탈주민	84

주요인물 약력

부 록

북한 사회주의 헌법	120
남북기본합의서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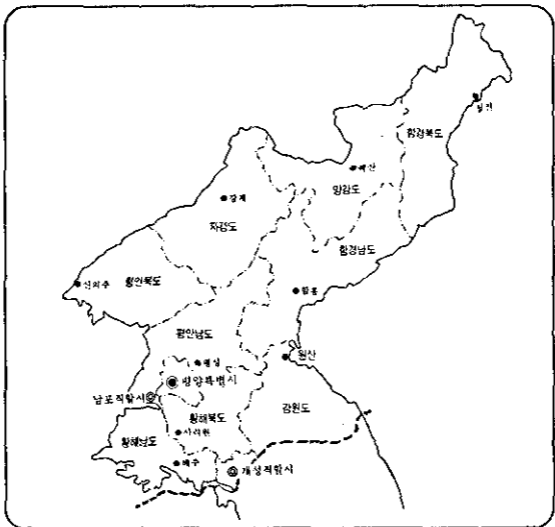
개 황

행정 구역

주요 현황

약 사

【행정 구역】



행정구역체계의 비교	
해방당시(4단계)	2000년 5월 (3단계)
도 군(시) 읍·면 리·동	도(특별시·직할시) 군(시·구역) 리(읍·동·노동자구)
6도 9시 89군	1특별시 2직할시 9도 25시 147군

※ 남한: 1특별시 6광역시
9도 72시 91군 69구

구 분	시(구역)	군(읍)	구	리(동)	노동자구	도소재지
평양특별시	(19)	4(4)		131(251)	6	-
남포직할시	(5)	1(1)		35(64)	-	-
개성직할시	1	3(3)		62(24)	-	-
평안남도	5	15(16)	1	370(34)	36	평성시
평안북도	3	22(22)		493(69)	38	신의주시
자강도	3	15(15)		242(61)	22	강계시
양강도	1	11(11)		152(23)	60	혜산시
황해남도	1	19(19)		408(25)	9	해주시
황해북도	2	14(14)		277(44)	6	사리원시
함경남도	3(6)	15(16)	1	475(133)	30	함흥시
함경북도	4(8)	13(13)		274(120)	37	청진시
강원도	2	15(15)		392(48)	7	원산시
합 계	25(38)	147 (149)	2	3,311 (896)	251	-

【주요 현황】

('99년 12월 기준)

명 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면 적	122,762km ² (한반도의 약 55%)
국 경	1,377.2km(중국접경: 1,360km, 러시아접경: 17.2km) ※ 휴전선 250km은 미포함
해안선	2,495km
지 형	동고서저 지형으로 동서 교통로 취약
정권수립	'48.9.9(헌법 '48.9.7 제정)
정당활동	「조선노동당」 1당 지도체제 「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이 우당으로 존재
대의기관	최고인민회의(정원: 687명, 임기5년)
내 각 *	33개부서(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수교국 *	189개국중 136개국과 수교
인 구	22,082,000명('99년 통계청 추계)
행정구역	1특별시 2직할시 9도 25시 147군
종 교	헌법상 인정(선전용 관제 종교단체)
화폐단위 **	원(1\$=2.16원/ 무역환율 기준)
명목GNI **	126억 달러(1인당GNI 573달러)
무 역 **	수출: 5.6억달러 / 수입: 8.8억달러
병 력	117만명(육군 100만명, 해군 6만명, 공군 11만명)
* 2000.5월 기준 ** '98.12월 기준	

【약 사】

일시	내 용
'45. 8.15	해방
'45.10.10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조선노동당 창립일로 선포)
'48. 2. 8	북한군 창설('78년 이후 4.25로 변경)
'48. 9. 8	헌법 제정 선포
'48. 9. 9	정권 수립 선포(수상: 김일성)
'49. 6.30	남노당, 북노당과 합당. 조선노동당 창설
'50. 6.25	북한군 전면 남침
'53. 7.27	휴전협정 조인
'55.12.28	김일성,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주체」용어 사용
'58. 3. 3	노동당 제1차 대표자 회의 개최 - 김두봉 등 8월종파 관계자를 '반 김일성 쿠데타 계획' 죄목으로 전면 숙청
'61. 7. 6	소련과 방위조약 체결
'61. 7.11	중국과 방위조약 체결
'61. 9.11	노동당 제4차 당대회 개최 - 연안파, 남노당파, 소련파, 국내파등 반김일성세력 제거
'62.12.10	노동당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 4대 군사노선 채택
'67.12.16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주체사상」 용어 사용

일시	내 용
'70.11.2	노동당 제5차 당대회 개최 - 당규약 전문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시
'72.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조국통일 3대원칙 합의)
'73. 9	당중앙위 비공식회의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
'75. 8.25	비동맹회의 가입(페루 비동맹 외상회의)
'77. 7. 1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80.10.10	노동당 제6차 당대회 개최 - 김정일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당 중앙위 군사위원으로 선출
'82. 2. 8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선거(615명 선출) - 김정일, 최초로 대의원에 피선
'84. 9. 8	「합영법」 제정
'89. 7. 1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평양)
'90. 9. 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개최
'91.12.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94. 7. 8	김일성 사망
'97.10. 8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
'98. 9. 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개최 -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헌법 개정(주석제 폐지)
'99. 4. 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 개최
2000.4. 4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 개최
2000.4. 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4.10 발표)

정 치

체제의 성격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내 각
검찰소·재판소

【체제의 성격】

■ 지도이념

- 김일성 「주체사상」

■ 기본목표

-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사회 건설(당규약 및 헌법)
- 과도기 단계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국가 건설

■ 체제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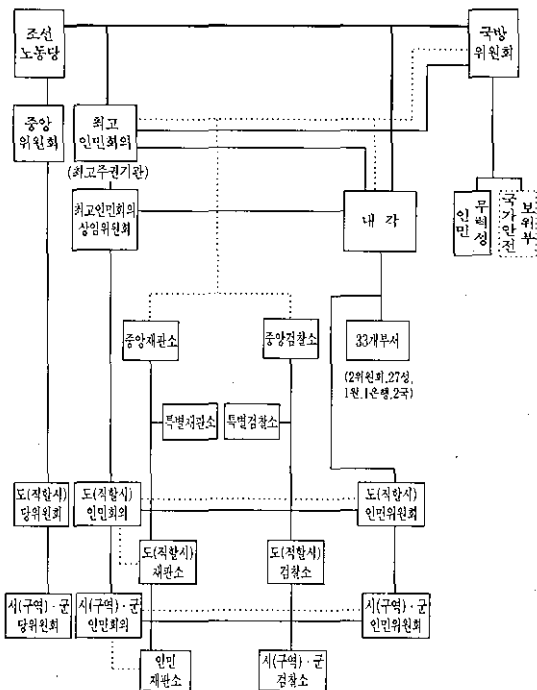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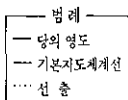
- 수령유일지배체제
- 세습영도체제
- 선군영도체제
- 일당독재체제

■ 주체사상 형성과정

내 용	제 기 시 기	배 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원 대회 (1955.12.28)	· 스탈린의 사망 · 당내 국내파 숙청
경제에서의 자립	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1956.12.11)	· 대외원조 감소(5개년 경제계획 수립 차질) · 당내 반김일성운동 고조
국방에서의 자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1962.12.10)	· 중·소분쟁의 심화와 미·소 공존 모색
정치에서의 자주	제2차 당 대표자회 (1966.10.5)	· 중·소분쟁의 확대 · 비동맹 운동의 발전
종합체제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1967.6.28) 및 제5차 당대회(1970.11.12)	·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김일성 개인숭배 운동 전개
김일성주의화	제6차 당대회(1980.10.10)	· 부자 세습체제 공고화

*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 새로운 정치슬로건 등장

■ 권력체계도



【조선노동당】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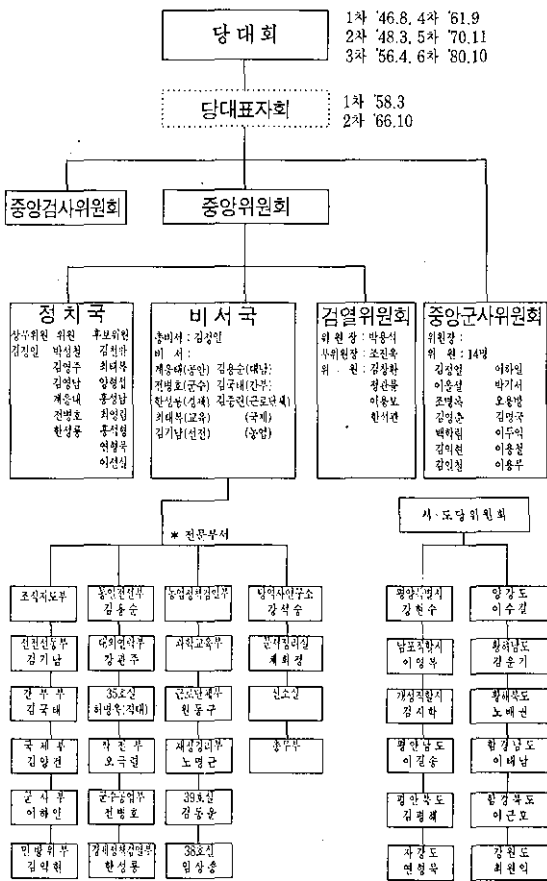
- '45.10.10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으로 창설
- '46. 8.23 신민당(김두봉)과 합당, 「북조선노동당」 창설
- '49. 6.30 남노당(박헌영)과 합당, 「조선노동당」 창설

■ 당 이념 및 목표의 변화 과정

당 대회	지도이념	최종 목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1946. 8.28~30)	(마르크스·레닌주의)	· 통일적 독립국가 건설
북조선노동당 제2차 대회 (1948. 3.27~30)	(마르크스·레닌주의)	· 통일적 독립국가 건설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 (1956.4.23~29)	(마르크스·레닌주의)	· 사회주의제도의 수립(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전 한반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1961.9.11~18)	마르크스·레닌주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 사회주의제도의 강화 발전(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전 한반도)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1970.11.2~13)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주체사상	·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대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수행 (전 한반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1980.10.10~14)	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대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전 한반도)

* 출처 : 각 대회 규약 및 회의록

■ 조 직



당 대회

1차 '46.8. 4차 '61.9
2차 '48.3. 5차 '70.11
3차 '56.4. 6차 '80.10

당대표자회

1차 '58.3
2차 '66.10

중앙검사위원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김경일 박성철 김태화
김영주 최태복
김영남 양성남
계승내 홍성갑
전병호 최영립
한성룡 홍성형
이선식 이선식

비서국

총비서 : 김성민
비서 :
계승내(중앙) 김용순(대남)
전병호(군수) 김국태(간부)
한성룡(경제) 김중현(근로단체)
최태복(교육) (국제)
김기남(선전) (농업)

검열위원회

위원장 : 박용식
부위원장 : 조진욱
위원 : 김창화
정진복
이용보
한석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 : 14명
김정연 이차인
이훈설 박기서
조명국 오용발
김영순 김명국
백학림 이두익
김익현 이용철
김인철 이용부

* 전문부서

시·도당위원회

- 조직지도부
- 동원전선부
김동순
- 농업경제검인부
- 당역사연구소
장석승
- 선전선동부
김기남
- 대외연락부
장관주
- 과학교육부
- 분석정보실
최희경
- 간부부
김국태
- 35호실
최병욱(직대)
- 근로단체부
원동구
- 인소실
- 국제부
김양건
- 작전부
오극열
- 재정경제부
노명근
- 총무부
- 간사부
이하인
- 군수공업부
전병호
- 39호실
김동운
- 민방위부
김익현
- 경제정책검인부
한성룡
- 38호실
임상중

- 평양시
강현수
- 양강도
이수길
- 남포직할시
이영부
- 황해남도
김운기
- 개성직할시
김시하
- 황해북도
노배선
- 평안남도
이길승
- 함경남도
이태남
- 평안북도
김경채
- 함경북도
이근모
- 자강도
연형복
- 강원도
최원익

■ 노동당 의곽단체

<정당, 대남>

조선천도교청우당 위원장 유미영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영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 의장 박성철 등	조국평화통일위원 회(조평통) 부위원장 김용순 등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 부위원장 고대철 등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북측본부 부위원장 장개인 등	조국통일범민족청년 학생연합북측본부 의장 김인호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김영대
조선평화옹호전국 민족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서기국장 강태무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유미영	남조선의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남조선의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 원회 위원장 문재철			

<대외>

조선 아시아·태평 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조선대외문화연락 위원회 위원장대리 문재철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조선외교협회 부회장 김양건
조선 아시아·아프 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 김국훈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몽호	종군위안부 및 대 평양전쟁피해자보 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선옥	조선반핵평화위원 회 위원장 김용순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복자위원회 회장 주성운	아시아여성들과 연대 하는 조선여성협회 회장 이청희	조선유네스코 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식량및 농업 기구 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개발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서기장 이태균	유엔기금조성조정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인종격리제도반대 조선위원회 위원장	

<사회·경제>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1비서 이일환

조선직업총동맹
(직총)
위원장 염순길

조선농업근로자동
맹(농근맹)
위원장 승상섭

조선민주여성동맹
(여맹)
위원장 천연옥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기자동맹
위원장

조선자연보호연맹
위원장 장일선

조선민주법률가
협회
위원장 함학선

조선중앙변호사
협회
위원장 이동석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국권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위원장 김용술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회장 정운업

조선아시아무역
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성록

조선국제합영
촉진위원회
위원장

조선국제무역
촉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종교·학술·체육>

조선카톨릭교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 강영섭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화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유미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장재언

조선사회과학자
협회
위원장 양형섭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예총)
위원장 장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위원장 조창덕

조선건축가동맹
위원장 김응상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김광우

조선역사협회
회장 전영록

조선 김정일화 연맹
위원장 장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황봉영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회장 박명철

【최고인민회의】

■ 지 위

-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며 휴회중에는 상임위원회가 대행
(헌법 제87조 및 제106조)
-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헌법 제111조)

■ 임무·권한

<p>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임기 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의 수정·보충 ○ 법률 제정, 조약의 비준 ○ 휴회중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소환 등 (헌법 제91조)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임기 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소집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대행 ○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에 대한 감독과 대책 마련 등 (헌법 제110조)

■ 조직

최 고 인 민 회 의

의 장 : 최태복
 부의장 : 장 철, 여원구
 대의원 : 687명('98.7.26 선거)

1998.9.5 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 원 장 : 김영남
 부위원장 : 양형섭, 김영대
 서 기 장 : 김윤희
 명예부위원장 : 박성철, 김영주

위원:
 유미영, 강영섭, 이길송, 이철봉
 이일환, 송상섭, 천연옥, 엄순길
 박태화, 이광호, 태형철

대의원자격

심사위원회

위원장:김국태

위원:

현철해, 채문덕
 이영복, 김상련
 정문산, 우두태

법제위원회

위원장 : 백학림
 위원:
 최영림, 김병물
 최원익, 박관오
 박선호, 최수현

예산위원회

위원장 : 한성룡
 위원:
 이태남, 홍서현
 현려진, 홍영길
 조혜숙, 이주웅

【국방위원회】

■ 지 위

-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헌법 제100조)

■ 임무·권한

-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등
(헌법 제103조)

■ 조 직

위원장 : 김정일

제1부위원장 : 조명록

부위원장 : 김일철, 이용무

위 원:

김영춘,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인민무력성

김 일 철

국가안전보위부

【내 각】

■ 지 위

-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
(헌법 제117조)
- 내각총리는 정부를 대표(헌법 제120조)

■ 임무·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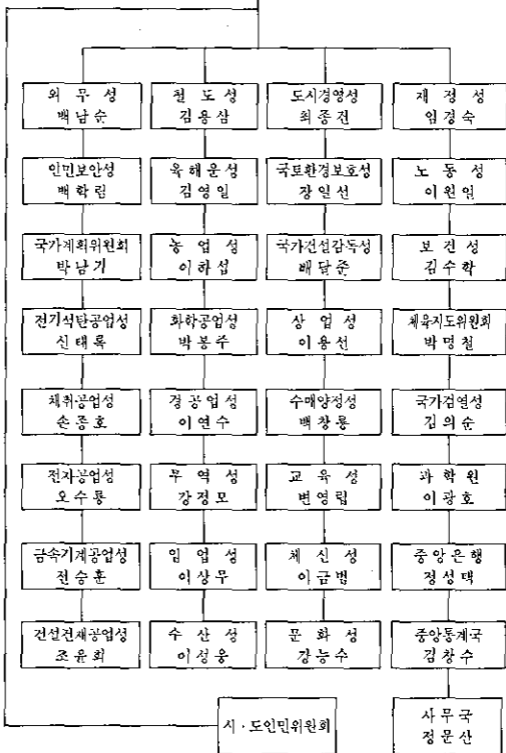
- 국가의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지도
-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국가의 인민경제 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과 통제사업 등

(헌법 제119조)

■ 조직

총 리: 홍성남
부총리: 조창덕, 광범기

33개부서(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검찰소 · 재판소】

■ 임 무

검찰소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
- 국가 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령·결정·지시, 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
-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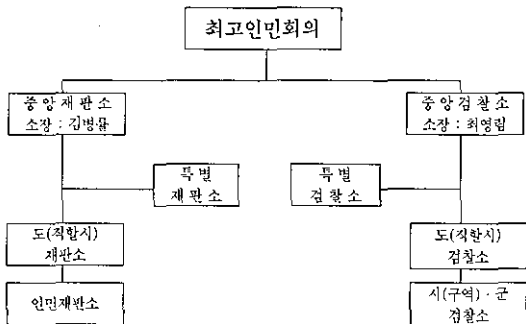
(헌법 제150조)

재판소

- 재판활동을 통하여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
-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함
-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및 공증사업

(헌법 제156조)

■ 조 직



군 사

정책기조 및 전략
4대 군사노선
군사 지휘체계
군사정책 변천과정
군사력 현황

【 정책기조 및 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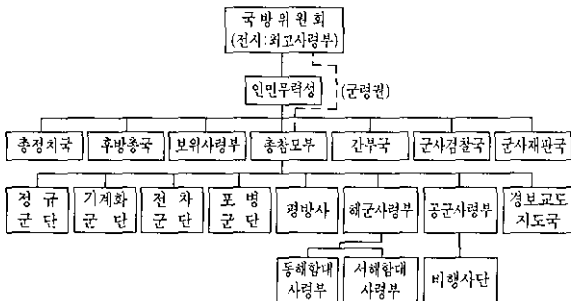
- 4대 군사노선 완성으로 대남우위의 군사력 및 독자전 수행능력 확보
- 전후방에서 전쟁동원태세 상시 건지
- 결정적 시기 도래시 전후방 동시공격, 고속기동전, 단기 속전속결 전략

【 4대 군사노선 】

노 선	정 책 목 표
전군간부화	군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군현대화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
전민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무장
전국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 1962.12 노동당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 결의 후 1963년 부터 「4대 군사노선」 추진

【 군사 지휘체계 】



【 군사정책 변천과정 】

구 분	내 용	비 고
'60년대	<p style="text-align: center;">(4대 군사노선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 · 전당·전인민의 전쟁동원태세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의존정책에서 탈피 · '69년 특수8군단 창설
'70년대	<p style="text-align: center;">(4대 군사노선의 관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 군사공업기지를 완성하여 획기적인 자위력의 육성 · 정규·비정규, 소부대·대부대 배합전술 위주 교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향상 · 휴전선에 남침용 땅굴 굴설
'80년대	<p style="text-align: center;">(4대 군사노선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동원태세 완비 ·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 현대전 능력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 설치 · SCUD미사일 개발 및 배치
'90년대	<p style="text-align: center;">(4대 군사노선의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일치 강화 · 전국가적·전인민적 방위체계 강화 · 독자적 전략무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중사, 군대원호 기동 진작 · 노동미사일 개발·배치·수출 및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방사포 등 장사정포 전방배치

【 군사력 현황 】

■ 정규군

구 분		내 용	
병 력		100만명	117만명
		6만명	
		11만명	
지상군	부 대	군 단	20개
		사 단	63개
		여 단	113개
	장 비	전 차	3,800여대
		장갑차	2,300여대
		야 포	12,000여문
해 군	수 상 전 투 함	430여척	
	지 원 함	470여척	
	잠 수 함 (정)	90여척	
	항 공 기	-	
공 군	전 투 기 (특 수 기)	850여대	
	지 원 기	520여대	
	헬 기	320여대	
예 비 전 력 (병 력)		745만여명	

※ 1999년판 국방백서

■ 예비병력

구 분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
병 력 수	173만명	414만명	118만명	39만명
연 령	17~45세 (여자 17~30세)	46~60세 (남자위주 편성)	14~16세 (고등중학교 4~6학년)	17세~60세
소 화 기	100%	100%	100%	100%
공용화기	70~80%	일부	일부	일부
훈련시간	연 500시간	연 160시간	연 450시간	-

외 교

외교정책 기초

외교정책 변천과정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구조

대UN 관계

남북한 외교활동 비교

【 외교정책 기조 】

■ 기본이념 · 원칙

- 자주, 평화, 친선
-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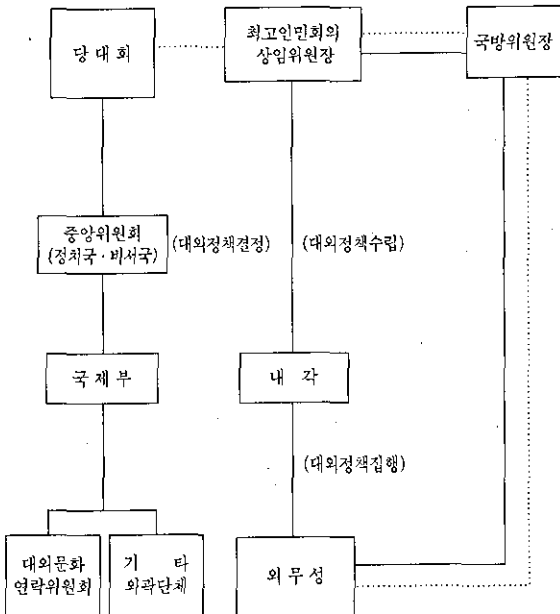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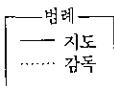
■ 기본목표

- 당면적으로는 정통성확보, 안전보장, 경제발전
- 최종적으로는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

【 외교정책 변천과정 】

구 분	내 용
'50년대 (중·소의존기)	소련을 추종하면서 중·소로부터 군사적·경제적 지원획득에 주력
'60년대 (중립국외교 강화기)	소련의 후루시초프 등장 이후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중·소와는 등거리 외교 전개
'70년대 (서방외교 모색기)	중국의 UN 가입('71.9), 닉슨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국제적 화해분위기 속에서 UN등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 제3세계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 및 서방국가에 대한 접근 모색
'80년대 (서방외교 추진기)	공산국가와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 외교 강화 방안 제시 및 추진
'90년대 (미·일외교 강화기)	소련의 붕괴와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 따른 국제적 고립탈피와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일을 중심으로 서방국가에 대한 접근 강화

【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구조 】



【 대UN 관계 】

시기	연도	주요 입장	비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UN 간섭 거부기	1948 ~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간섭 거부 -UN에 의한 남한 지역 단독선거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 1952 UN가입 신청 · 1950.6.28 안보리,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 · 1953.7.27 UN군사령관과 휴전협정 체결
한반도문제의 UN상정 거부기	1954 ~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을 미국과 동일시 · 통일을 위한 남북한 포함 유관국회의 재의 · UN권능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8.14 김일성, 남북 연방제 재의 · 1966.8.12 자주노선 선언 · 1969.10.28 서독 한슈타인 원칙 폐기
한반도문제의 선별적 UN상정기	1971 ~ '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과 미국 분리시도 -미군에게서 UN모자 벗기기 · 한반도 문제의 UN문 제화 시도 · '고려연방국' 단일국호로 UN가입 재의 · '교차승인' 및 남북한 'UN동시가입' 반대 -UN의 목적과 원칙준중 · 단일의석 공동가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4.12 허담, 8개항제시 · 1972.7.4 남북 공동성명 · 1973.9.5 UN대표부개설 · 1974. 제29차 UN총회, UNCURK 해체안 결의 · 1975. 제30차 UN총회, 남북한 지지 두개 결의안 동서 통과 · 1976.9 공산측 결의안 철회
UN동시 가입기	1991.9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관련 IAEA결의에 UN의 추종반대 · 새로운 평화체제 창설에 UN관심 촉구 ·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 및 연방제 통일 주장 · 국제관계에서의 자주권 준중 · UN활동의 민주적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9.17 남북한 UN동시 가입 · 1999.9.25 백남순 외무상, 제54차 총회 기조연설 및 유럽국가 등 20여개국과 외무장관 회담 개최

【 남북한 외교활동 비교 】

■ 남북한 수교현황

(2000.5.10 현재)

구분	한국	북한	동시수교
아주	34	21	19
미주	34	20	19
구주	50	37	36
중동	14	9	8
아프리카	51	49	49
계	183	136	131

* 세계 총 191개국(대만 제외)에서 남북한을 제외한 189개국 중, 한국의 미수교국은 6개국(쿠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마케도니아, 산마리노, 모나코)

■ 남북한 재외공관 현황

(2000.5.10 현재)

지역	상주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계
아주	22(12)	15(2)	1(1)	38(15)
미주	16(4)	13(-)	1(1)	30(5)
구주	27(10)	2(1)	2(7)	31(18)
중동	12(3)	-	~(2)	12(5)
아프리카	14(9)	-	-	14(9)
계	91(38)	30(3)	4(11)	125(52)

()는 북한

■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현황

(2000.5.10 현재)

구분	유엔 및 산하기구	유엔전문기구	유엔독립기구	정부간기구	합계
한국	5	16	3	66	90
북한	4	11	0	20	35

경 제

경제체제 및 정책
경제관리 체계
경제계획 목표와 실적
재 정
전력·수송
식량·비료
대외무역
분야별 현황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

【경제체제 및 정책】

■ 경제체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국가계획위원회 중심의 일원화된 계획경제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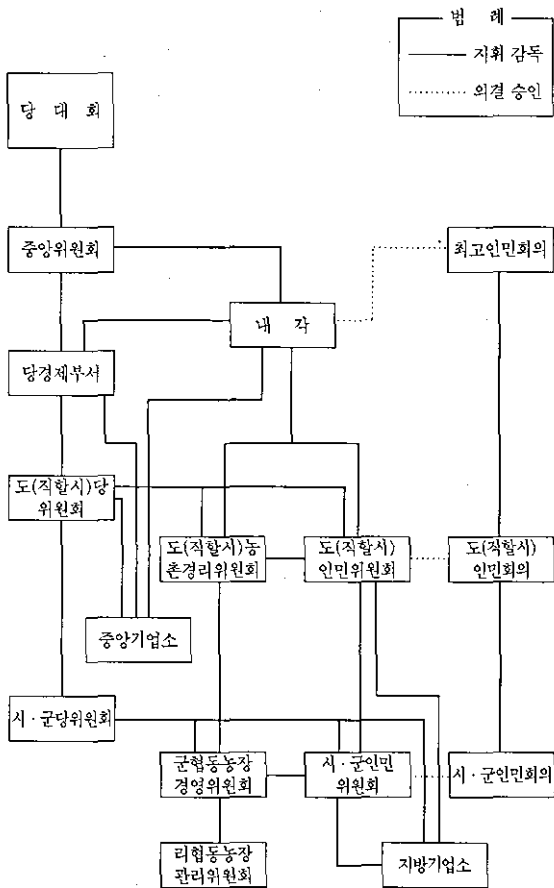
■ 정책기조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 모든 문제를 자체 힘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제국주의 세계경제 일체화 책동에 맞서는 노선이라고 강조
- 중공업 우선정책
 -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인식
- 군사·경제의 병진
 - '60년대 중반이후 공산권의 이념분쟁과 중·소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군사력 강화와 경제건설 병진정책 추진

■ 관리방법

- 청산리방법
 - 당 노선·정책 관철, 현지실정을 감안한 문제 해결, 정치활동 선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지도방법
- 대안의 사업체계
 -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아래 생산활동을 관리토록 하는 공업부문 관리방법

【 경제관리 체계 】



【 경제계획 목표와 실적 】

구 분	기 본 과 업	주 요 목 표	실 적
제1차 7개년계획 (1961~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업 발전 ·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 전국적 기술혁신 ·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 군사·경제 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2.7배 · 공업총생산: 3.2배 · 곡물수확고: 600~70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총생산: 3.3배 - 노동생산성 성장: 147.5%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미달 → 계획기간 3년 연장
6개년계획 (1971~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견고화 · 산업설비 근대화 · 기술혁명 추진 ·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1.8배 · 공업총생산: 2.2배 · 곡물수확고: 700~75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1.7~1.8배 - 공업총생산: 2.5배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채문제 발생 등 실적 저조 → 완충기('76-'77) 설정
제2차 7개년계획 (1978~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 생산원가 인하 · 절약운동 강화 · 수송의 근대화 · 주민생활 향상 · 독립채산제 강화 · 대외무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1.9배 · 공업총생산: 2.2배 · 곡물수확고: 1,000만톤 · 80년대 10대전망목표와 4대지연개조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총생산: 2.2배 - 전력생산 성장률: 178% - 철강생산 성장률: 185%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목표 제시 등 노력 애도 불구하고 성과 미미 → 완충기('85-'86) 설정
제3차 7개년계획 (1987~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 기술혁신 ·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1.7배 · 공업총생산: 1.9배 · 농업총생산: 1.4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생산: 1.5배 - 전력: 1.3배 - 석탄: 1.4배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이 목표대비 61% 수준에 불과 → 완충기('94-'96) 설정

【 재 정 】

■ 재정의 특성

구 분	내 용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의 통제적 기능 ○ 재정의 분배적 기능
구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경제 부재로 인민경제의 대부분을 예산에 의존 ○ 예산수입 원천 : 거래수익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4.1부로 세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세금이 없는 나라' 라고 선전 ○ 예산항목 :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 '99 결산 및 2000 예산 편성 내역

- '99년 예산규모는 92.2억달러
(북한화 200.2억원, 1\$=2.17북한원)
 - '98년대비 1.3% 증가하였으나, '94년의 48% 수준에 불과
 - ※ '99년 남한 예산 677억달러의 13.6% 수준 (1\$=1,189원)
- 2000년 예산규모는 93.6억달러
(북한화 204.5억원, 1\$=2.18북한원)
 - 전력, 석탄 등 에너지 부분에 높은 증가율로 편성
 - ※ 농업은 '99년 증가율(11%)보다 낮아진 5% 수준
 - ※ 2000년 남한 예산 768.9억달러의 12.1% 수준 (1\$=1,125원)

【 전력 · 수송 】

■ 전력

('98.12.31 기준)

- 총 발전설비용량 : 739만kW(남한 4,698만kW의 16% 수준)
- 전력생산이 가능한 「실질 발전설비용량」 : 200만kW
 - ※ 전체 발전설비의 73% 이상이 폐기 또는 요보수 설비
- 전력 생산량(발전량) : 170억kWh(남한 2,153억kWh의 8% 수준)
- 실질 전력 소비량 : 114억kWh(남한 1,935억kWh의 6% 수준)
 - ※ 송배전 손실분(손실을 30%), 자체 소모분(소모율 2~5%)감안

■ 수송

('98.12.31 기준)

- 철도 총연장 : 5,214km(남한 6,683km의 78% 수준)
 - ※ 전력 부족으로 잦은 운행 중단(전철화율 : 79%)
- 도로 총연장 : 23,407km(남한 86,990km의 27% 수준)
 - ※ 도로 포장율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2차선 이하가 대부분
- 항만 하역능력 : 3,501만톤(남한 41,625의 8% 수준)
 - ※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전무하고 크레인 등 하역 장비가 부족

【 식량 · 비료 】

■ 식량

- 구조적으로 연간 200여만톤의 식량이 부족
 - 연간 수요량 : 600여만톤, 자체 생산량 : 400만톤 내외
- 금년도는 수요 606만톤, 자체생산 422만톤으로 184만톤 부족
 - ※ 22% 감량배급 기준시 수요량은 518만톤으로 96만톤 부족
- 연도별 곡물 도입량 : '95년 96만톤, '96년 105만톤
'97년 163만톤, '98년 104만톤
'99년 107만톤

■ 비료

- 연간 100여만톤의 비료가 부족
- 금년도는 수요 158만톤, 자체생산 81만톤(복합미생물비료 포함)으로 77만톤이 부족
 - ※ 단비 중심 생산체계로 복합비료 생산이 극히 저조하며, 칼리 비료 생산능력은 전무
- 연도별 비료 도입량 : '96년 6.1만톤, '97년 20.5만톤
'98년 27만톤, '99년 25~30만톤

【 대외무역 】

■ 무역정책 및 동향

○ 무역정책 변화

- 사회주의권 붕괴이전('80년대) : 자체생산이 불가능한 필요 상품만을 무역을 통해 해결한다는 소극적 입장
- 사회주의권 붕괴이후('90년대) :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설정('91), 「무역제일주의」 제시('94) 등 보다 적극적 자세

○ '98년 대외무역 동향

- 대외무역총액 : 전년비 33.7% 감소한 14.4억달러
- 수출은 수산물, 광물 등 1차 상품 중심(32%)
-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자 수입

■ 대외무역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합 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1990	1,960	-	2,760	-	4,720	-
1991	1,010	△48.5	1,710	△38.0	2,720	△42.4
1992	1,020	1.0	1,640	△4.1	2,660	△2.2
1993	1,021	0.1	1,620	△1.2	2,641	△0.7
1994	839	△17.8	1,269	△21.7	2,108	△20.2
1995	736	△12.3	1,316	3.7	2,052	△2.7
1996	726	△1.3	1,250	△5.0	1,976	△3.7
1997	904	24.5	1,272	1.8	2,177	10.1
1998	559	△38.2	883	△30.6	1,442	△33.7

【 분야별 현황 】

■ 총량지표

구분	단위	1995	1996	1997	1998
GNP	억달러	223	214	177	*126
1인당 GNP	달러	957	910	741	*573
경제성장률	%	-4.6	-3.7	-6.8	-1.1
무역총액	억달러	20.5	19.8	21.8	14.4
외채	억달러	118	120	119	121

* 1998년 GNP → GNI, 1인당GNP → 1인당GNI

■ 에너지 산업

구분	단위	1995	1996	1997	1998
석탄생산량	만톤	2,370	2,100	2,050	1,850
발전량	억kWh	230	213	193	170
원유도입량	만톤	110	94	51	50

■ 농수산물 생산량

구분	단위	1995	1996	1997	1998
곡물	만톤	345	369	349	389
(쌀)	만톤	121	134	150	146
수산물	만톤	105	88	65	63

■ 광공업 생산량

구분	단위	1995	1996	1997	1998
철광석	만톤	422	344	291	289
강철	만톤	153	121	102	95
자동차	만대	0.87	0.85	0.64	0.64
시멘트	만톤	422	379	334	315

■ 경공업 생산량

구분	단위	1995	1996	1997	1998
직물	억㎡	1.8	1.5	1.2	1.1
화학섬유	만톤	5.6	5.6	3.7	3.5

【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 】

('98년기준)

구 분	단 위	북한(A)	남한(B)	B/A(배)
1. 인 구	천 명	21,942	46,430	2.1
2. 명목 GNI	10억원 (억달러)	17,595 (126)	443,127 (3,168)	25.2 (25.2)
3. 1인당 GNI ¹⁾	만원 (달러)	80.2 (573)	954.4 (6,823)	11.9 (11.9)
4. 경제성장률	%	-1.1	-5.8	-
5. 대 외 경 제				
무역총액	억달러	14.4	2,255.9	156.7
(수 출)	억달러	5.6	1,323.1	236.3
(수 입)	억달러	8.8	932.8	106.0
(무역액/명목GNI)	%	11.4	71.2	-
대미 환율	원/달러	2.20	1,398.88	-
외채	억달러	121.0	1,493.5	12.3
<순외채>	억달러	N.A	195.5	-
(외채/명목GNI)	%	96.0	47.1	-
6. 예산규모	억달러	91.0	540 ²⁾	5.9

주 : 1) ()내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환산한 수치

2)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

구 분	단 위	북한(A)	남한(B)	B/A(배)
7. 에너지산업				
석탄생산량	만ton	1,860	436	0.2
발전용량	만kW	739	4,341	5.9
발전량	만kWh	170	2,153	12.7
원유도입량	만ton	50	11,077	221.5
8. 농수산물생산량				
곡 물	만ton	388.6	575.9	1.5
(쌀)	만ton	146.1	509.7	3.5
수 산 물	만ton	62.7	283.4	4.5
9. 광산물생산량				
철 광 석	만ton	289.0	23.8	0.1
비철금속	만ton	9.7	95.3	9.8
10. 중화학공업생산량				
자 동 차	만대	0.64	195.4	305.3
즈 선	만 G/T	3.8	863.5	227.2
강 철	만ton	94.5	3,989.6	42.2
시 멘 트	만ton	315.0	4,609.1	14.6
11. 경공업생산량				
직 물	억㎡	1.1	21.0	19.1
화 섬	만ton	3.5	243.7	69.6
12. 사회간접자본				
철도총연장	km	5,214	6,682	1.3
도로총연장	km	23,407	86,989	3.7
항만능력	만ton	3,501	41,625	11.9
선박보유	만ton	72.0	524.3	7.3

사회·문화

평양특별시

주요도시

명승고적

명절

남북한 생활용어 차이

【평양특별시】

■ 역사

- 고조선이 도읍지로 정한 이래, 4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보유한 북부지방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현재의 수도
- 평양이란 이름은 '평퍼짐하고 아늑한 고장'에서 유래되었으며 버드나무가 많아 '버드나무 고을(柳京)'로 불렸음.
- 현재의 평양시는 6.25전쟁으로 구 시가지가 파괴된 후 도시 계획에 의해 재건

■ 현황개요

- 면적은 총 2,113km²에 총인구는 280만명 내외
- 평양주민의 자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특별히 관리
- 현재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시장)은 양만길

■ 시가구성

- 19개 구역과 4개 인접 郡으로 구성된 평양은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
- 중심지역 : 대동강과 그 지류인 보통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통강·모란봉·중·평천구역 등
- 동 평 양 : 대동강 동안의 대동강·동대원·선교구역 등 신시가지 형성
- 서 평 양 : 대규모 체육시설물이 건설된 청춘거리, 신흥주택가로 개발되고 있는 광복거리, 만경대구역 등
- 주변지역 : 승호·용성구역과 4개 인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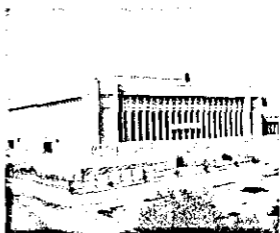
■ 중심거리

거리명	위치	거리주변의 명소
승리거리	대동강변을 따라 대동교, 옥류교 능라다리까지	노동신문사, 정무원청사 김일성광장, 평양제1백화점 평양학생소년궁전 아동백화점, 옥류관 등
천리마거리	충성의 다리에서 보통문까지	창광산여관, 평양체육관 창광원, 낙원백화점 등
창광거리	천리마거리에 이웃하여 평양역에서 보통문까지	노동당사, 당창건사적관 고려호텔, 평양역전 백화점 대단위식당가 등
개선거리	개선문에서 전우역까지	김일성경기장, 중국대사관 전승혁명사적관 등
광복거리	만경대에서 광복역앞 팔팔사거리까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교예극장 등의 문화위락시설 12-3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통일거리	원래의 낙랑거리	주택가와 각종 문화후생시설
청춘거리	광복거리 칠골교차로에 서 대동강변 도로까지	주경기장과 배구·역도 등 13개의 경기장 및 부대시설

■ 평양시 주요명소

△ 만수대의사당

- 건립: 1984.10
- 위치: 평양시 중구역 만수동
- 제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석조건물
- 용도: 최고인민회의 의사당
- 특징: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비롯한 주요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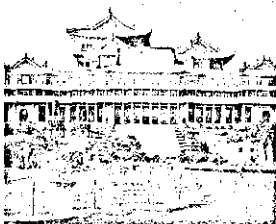
△ 금수산기념궁전

- 건립: 1995.7.8(김일성 사망 1주기)에 기존의 주석궁을 새로 단장
- 위치: 평양시 대성구역 미암동
- 제원: 궁전건물과 광장(길이 415m, 너비 216m)으로 구성
- 용도: 김일성 생전 집무실을 성역화, 김일성 시신 안치
- 특징: 1996. 7.27 김정일의 지시로 궁전광장을 일반인에게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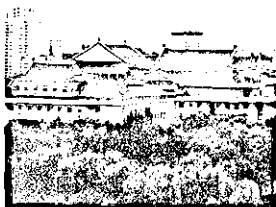
△ 인민대학습당

- 건립: 1982. 4. 1
- 위치: 평양시 중구역 남산재
- 제원: 높이 63m, 너비 150m
길이 190m의 10층 건물
- 용도: 과학기술·문화 지식
센터, 북한최대의 종합
도서관
- 특징: 3,000만권 장서
6,000여석 열람실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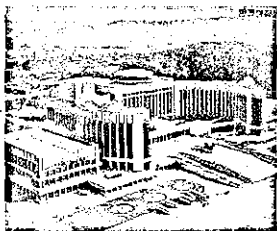
△ 인민문화궁전

- 건립: 1974. 4. 14
- 위치: 평양시 천리마거리와
보통강유원지 사이
- 제원: 지상 4층(외관상 3층)
과 지하1층, 건물 3개동
500여개의 방
- 용도: 문화시설(회의실, 연회
장, 영화관)
- 특징: 김일성이 직접 건물의
이름, 성격, 관리운영방법
등 제반사항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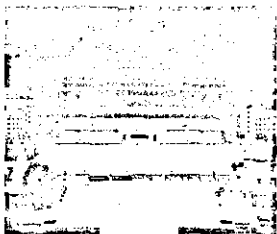
△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 건립: 1989. 4
- 위치: 평양시 만경대구역
- 제원: 높이 60m, 너비 200m
길이 280m, 700여개의 방
- 용도: 교육·문화시설
- 특징: 600여명의 지도교원
들이 과학, 교육, 예술,
체육 부문에서 200
여개의 소조들을 운영



△ 김일성광장

- 건립: 1954. 8
- 위치: 평양시 중구역 남산재
동쪽기슭
- 제원: 직사각형 마당, 대주석단
등으로 구성
- 용도: 정치·문화행사
경축야회, 군중집회용
- 특징: 6.25전쟁 시기에 작성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
에 따라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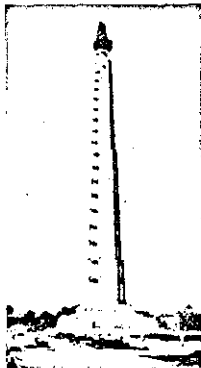
△ 개선문

- 건립: 1982. 4.14
- 위치: 평양시 Moranbong구역
- 제원: 높이 60m, 너비 50.1m
폭 36.2m의 4층 건축물
- 용도: 전망대 등(프랑스 개선문 모방)
- 특징: 1945.10.14 김일성이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개선 연설을 하였다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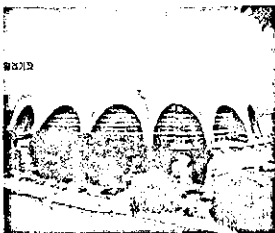
△ 주체사상탑

- 건립: 1982. 4.15
- 위치: 평양시 대동강변 동대원구역 옥류교와 대동교 사이
- 제원: 높이 170m(탑신 150m, 햇불 20m)
- 용도: 주체사상 창립 기념 선전탑
- 특징: 25,550개로 구성된 화강석은 김일성 출생부터 70회 생일까지의 날짜를 합친 숫자를 의미



△ 5월1일 경기장

- 건립: 1989. 5. 1(국제노동절)
- 위치: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능라도)
- 제원: 6만여평, 8층, 15만명
수용 가능
- 용도: 경기장, 각종 군중대회
장소
- 특징: 북한 최대의 옥외경기장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시 개·폐회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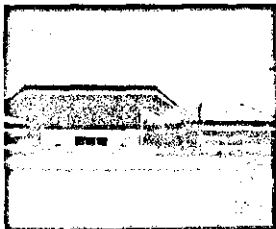
△ 김일성경기장

- 건립: 1982년 모란봉경기장을
증·개축
- 위치: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
- 제원: 총면적 48,485㎡, 수용
인원 10만여명
- 용도: 경기장, 각종 군중대회
장소
- 특징: 1945.10.14 김일성 환영
군중 집회가 개최된 장소



△ 평양교예극장

- 건립: 1989. 5. 1
- 위치: 평양시 광복거리
- 용도: 평양교예단 전용교예극장
- 재원: 건물 5개동, 3,500여석의 관람석
- 특징: 평양교예단은 구 평양교예극장(현 인민군교예극장)을 사용하다가 동 건물로 이전



△ 옥류관

- 건립: 1960. 8. 15
- 위치: 평양시 중구역 창전동 대동강변
- 재원: 2층 한옥, 본관·별관, 2,200여석의 대·소연회장 등 30여개의 방
- 용도: 당·정간부들의 연회 및 외국인 접대장소로 이용
- 특징: 북한최초의 대규모 음식점.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평양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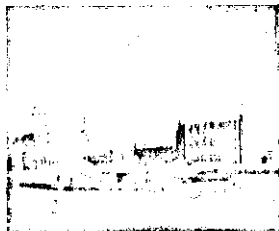
△ 평양산원

- 건립: 1980. 7.30
- 위치: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거리
- 제원: 13층의 기본청사를 비롯한 6개동의 건물, 침상수약 1,500개
- 용도: 종합적인 여성 의료 복지시설



△ 창광원

- 건립: 1980. 3.21
- 위치: 평양시 중구역 보통강기슭
- 제원: 4층 건물, 400여개의 방
- 용도: 목욕탕, 물놀이장, 수영장, 이발관, 안마실, 미용실, 식당 등
- 특징: 북한 최대의 대중 종합 편의시설
1일 16,000여명 수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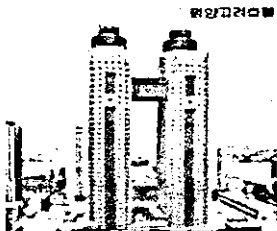
△ 백화원초대소

- 건립: 1983
- 위치: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
- 용도: 영빈관 시설
- 특징: 남북회담시 한국측 숙소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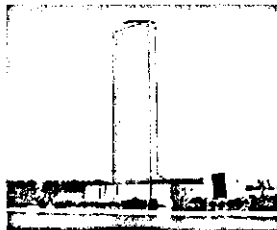
△ 고려호텔

- 건립: 1985. 8
- 위치: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
- 재원: 쌍탑식 45층 건물(높이 140m), 약 500여개의 객실
- 특징: 방북 외국인들의 단골 숙소



△ 양각도 국제호텔

- 건립: 1987. 8
- 위치: 평양시 대동강상의 양각도
- 재원: 48층, 1,000여개의 객실
- 특징: 프랑스와 합작



△ 유경호텔

- 건립: 1987. 8 착공
- 위치: 평양시 보통강유역 봉화거리
- 재원: 105층(객실수 3,000) 높이 300m
- 특징: 1992년말 공사중단 상태



△ 모란봉

- 위치: 평양시 모란봉구역
- 제원: 250여만㎡, 최승대(98m)가 최고봉
- 용도: 평양시민의 문화휴식터
- 특징: 원래 '금수산'이라고 불리었으나 생김새가 모란꽃과 같다 하여 모란봉이라 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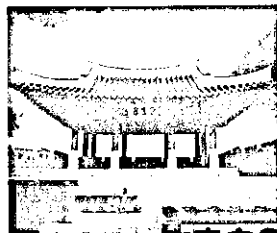
△ 부벽루

- 건립: 393년 창건, 1614년 재건
- 위치: 평양시 모란봉구역
- 제원: 정면 5칸(14.58m) · 측면 3칸(7.68m)의 누정
- 특징: 영명사의 부속건물로서 '영명루'로 불리다가 12세기초부터 '부벽루'로 호칭



△ 을밀대

- 건립: 6세기중엽 평양성 내성의 '북장대'로 건립, 1714년에 개축
- 위치: 평양시 모란봉구역
- 제원: 높이 11m의 축대 위에 정면3칸, 측면2칸의 누정
- 특징: 1960년에 대규모 개수작업



【 주요도시 】

■ 남포직할시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86만('96년), 면적 829km²로 북한 제2의 도시 ○ 중국 칭따오, 톈진 등과 연결되는 국제항구 ○ 대동강하구 북쪽에 위치. 평양에서 44km로 평양-남포간 고속도로와 대동강을 이용한 하천운수가 발달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강이 흘러 퇴적된 구릉과 평야로 구성. 연평균 기온 10℃, 1월 평균기온 -6.5℃, 8월 평균기온 24.4℃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900mm 내외
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철, 제강 및 비철금속제련공업 중심, 기계·조선·금속·유리공업 발달 ○ 조기, 갈치 등 어류를 중심으로 한 근해수산업, 축산업
관광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잡문: 대동강 하구를 가로막아 건설한 8km의 댐 ○ 와우도 해수욕장, 평양골프장 등

■ 개성직할시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41만('96년), 면적 131km²의 역사적 고도. ○ 판문점에서 12km, 서울에서 78km 거리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쪽으로 송악산, 용호산, 진봉산 등 산악지대, 동쪽으로는 입진강, 서쪽으로 예성강, 남쪽으로 한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분지 형세 ○ 연평균 기온 10.4℃, 강수량 1,250mm
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회석, 금, 동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기계공업, 경공업 발달 ○ 농업은 벼, 옥수수 등 알곡 생산과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
관광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박물관, 성균관, 박연폭포와 관음사, 공민왕릉·만수산, 송악산·만월대, 선죽교, 개성 남대문 등 많은 유적지 산재

■ 원산시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1만('96년), 면적 269km² ○ 강원도 도소재지로 동해 원산만에 위치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쪽으로 마식령 산줄기, 동쪽 해안에는 평야지대를 따라 흰 모래벌 발달 ○ 연평균 기온 10.4℃, 강수량은 1,400mm
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원선, 함경선, 동해북부선 등의 철도가 연결된 교통 요지, 상공업의 중심지 ○ 기계공업과 수산가공업이 가장 발달
관광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명사십리, 명적사 등

■ 신의주시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4만('96년), 면적 166km² ○ 압록강 하류에 위치,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관문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적지형으로 해발고도가 낮음 ○ 연평균기온 8.8℃, 강수량 1,060mm
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섬유, 방직, 건재공업 발달 ○ 압록강 하구에 농업지대 형성
관광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주읍성, 정주 동고성(천리장성의 일부), 신원동 석등 등 유적지 다수

■ 함흥시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86만('96년) ○ 함경남도 도 소재지로 함흥평야 지대에 위치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야와 저구릉지. 성천강이 시내를 관통 ○ 연평균기온 9.8℃. 강수량은 934mm
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이후 비날론공장, 비료공장 등이 건설되어 북한 화학공업의 중심지
관광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흥8경, 함흥본궁(함흥차사로 유명), 만세교, 구경대 등

■ 청진시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73만('96년) ○ 함경북도 도 소재지로 함경북도 중앙부의 해안에 위치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부는 해발 1,000m이상 산지. 중심지는 평야 ○ 연평균기온 8.1℃. 강수량은 615mm
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북 제일의 무역항이며 인근 광산의 지하자원을 활용한 제철, 제강공업이 발달 ○ 연해에는 명태, 대구, 고등어 등이 풍부하여 수산업발달
관광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포리 유적, 판장온천, 용천온천 등

【 명승고적 】

■ 명승지

금 강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금강군과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봉은 1,639m의 비로봉 ○ 내금강의 비로봉·만폭동·명경대, 외금강의 만물상·구룡연과 구룡폭포·옥류동·상팔담·귀면암, 해금강의 해만물상·총석정·삼일포가 유명
백 두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강도 삼지연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봉은 2,750m의 장군봉 ○ 최고 깊이 384m의 천지와 삼지연호가 유명하며 인근 보천보, 무산지구 등에 백두산 밀영, 보천보혁명박물관 등 각종 김일성·김정일 위상화 기념물 건립
묘 향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북 향산군, 자강도 회천시, 평남 영원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봉은 1,909m의 비로봉 ○ 보현사, 상원동, 만폭동, 천태동이 유명하며 '78년 묘향산 입구에 「국제천선전람관」을 건립, 김일성·김정일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을 대륙별, 나라별로 전시.
칠 보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 명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695m ○ 함북 금강으로도 불리우며 내칠보의 만사봉 관음봉 농부바위, 외칠보의 강선문·학무대·옥환바위, 해칠보의 코끼리바위 붓바위 무지개 바위 등 기묘한 봉우리들로 유명 ○ 현재 칠보산의 자연바위들에는 김정일을 칭송한 문구, 혁명송가 등이 새겨져 있음.
박연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 북쪽으로 약 24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경덕, 황진이와 함께 송도 3절로 유명 ○ 폭포의 높이는 37m이며 폭포가 떨어지는 고모담과 인근의 관음사도 유명

■ 고적지

대 동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시기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평양시 중구역 김일성광장 인근에 소재 ○ 「국보 1호」이며 현재의 문루는 1635년 재건된 것으로 총 높이는 19m
보 통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시기 평양성 중성의 서문으로 평양시 중구역 보통강 기슭 천리마거리 입구에 소재 ○ 「국보 2호」이며 현재의 문루는 1473년에 재건
강 서 3 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고구려 후기의 벽화무덤으로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 소재 ○ 「국보」 3·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강서 3묘(대묘, 중묘, 소묘)중 강서대묘가 널리 알려짐. ○ 강서소묘에는 벽화가 없으며 강서대묘의 청룡과 현무도, 강서중묘의 백호와 주작도는 고구려 후기 회화의 대표적인 걸작품.
단 군 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 기슭에 소재하고 있으며 단군룡 봉분은 1994개의 돌로 9층의 층단형식. ○ 북한은 1993. 9 민족사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단군룡 개건을 착수.
동 명 왕 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시조인 고주몽의 묘로서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보 18호 ○ 1980년대초 김일성종합대 역사연구팀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고 1993. 5 준공.
덕 흥 리 벽화 무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의 대신급 인물인 「진」의 무덤으로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기 408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18년에 축조 ○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벽화무덤 가운데 무덤의 주인공과 축조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 ○ 풍부한 벽화와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 4세기말 ~ 5세기초 당시의 정세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
평 양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 427년 고구려의 장수왕의 평양 천도시 신축된 성으로 현재 평양의 중구역, 모란봉구역, 외성구역, 평천구역 일대. ○ 성벽의 둘레는 약 16km.

【명절】

명 칭	구 분		비 고
	국가명절	민족명절	
설 날		1.1	2일 연휴(1.2은 휴무일)
음 력 설 날		1.1(음)	휴무일
김정일 생 일	2.16		2일 연휴(2.17일은 휴무일)
국 제 부 녀 절	3.8		
한 식		4.6	휴무일
김 일 성 생 일	4.15		2일 연휴(4.16일은 휴무일)
국 제 노 동 자 절	5.1		
단 오		5.5(음)	휴무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7.27		
해 방 기 념 일	8.15		
추 석		8.15(음)	2일 연휴(8.16은 휴무일)
정 권 창 건 일	9.9		
노 동 당 창 건 일	10.10		
헌 법 절	12.27		
계	9회	5회	총 14회, 18일

【 남북한 생활용어 차이 】

북한말	우리말
가슴쓰러기	위염, 위궤양
가슴띠	브래지어
가시대	썩크대, 개수대
가위 주먹	가위 바위 보
강타기	얼음지치기
거의없이	틀림없이
건늬길	횡단보도
결속하다	결론짓다, 마무리 하다
경우맞춤	임기응변
고모사촌	고종사촌
고삐고삐	구석구석
고아대다	시끄럽게 떠들다, 고함치다
과일단물	쥬스
곽밥	도시락
그루빠(러시아어)	그룹(group)
남새	야채, 채소
내오다	마련하다
냉동기	냉장고
단목	젤리
동약/ 동의사	한약/ 한의사

북한말	우리말
별방지대	평야지대
들모임	소풍
말밥	구설수
몸간다	살빠다
문화어	표준어
방거두매	방청소
부스럭돈	잔돈
사진깨운다	사진인화
얼음보숭이	아이스크림
오그랑수	남몰래 속여 넘기려는 수법
요해하다(료해하다)	이해하다
우등불	모닥불
원주필	볼펜
이신작척	솔선수범
일떠서다	힘차게 일어서다
일없다	괜찮다
직관물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벽보, 구호, 그림, 사진, 도표 등
직승기	헬리콥터
집안 거두매	집안일
후과	결과

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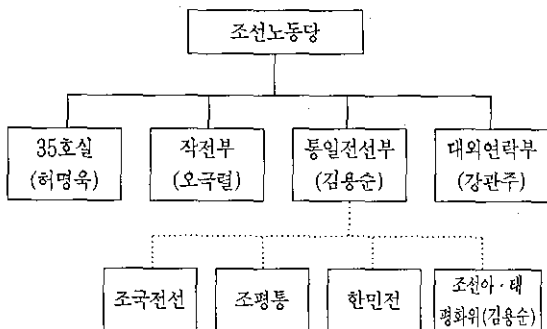
기본목표 · 전략전술
대남사업기구 및 인물
통일의 원칙 · 방안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주요 대남제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 기본목표 · 전략전술 】

기본목표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전략전술	○ 혁명적 민주기지론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 3대 혁명역량 강화 ○ 통일전선전술 ○ 민족대단결론

【 대남사업기구 및 인물 】

■ 기구도표



■ 기구별 임무 및 책임인물

△ 35호실

○ 임무 : 대외 및 대남정보 수집, 국제·대남 테러공작

○ 실장(직무대리) : 허명옥(67세)

△ 작전부

○ 임무 : 공작원 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안내 및 복귀

○ 부장 : 오극렬(68세)

△ 통일전선부

○ 임무 : 통일전선 공작, 남북대화 업무

○ 부장 : 김용순(66세, 당 대남담당비서)

△ 대외연락부

○ 임무 : 지하당 건설 등 대남공작 거점 구축, 통일전선 형성, 간첩교육 및 파견, 밀봉교육초대소 및 연락소 운영

○ 부장 : 강관주(70세, 일명 : 강주일)

△ 외곽단체

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 1949년 72개 정당·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결성한 통일관련 노동당 전위기구

- 북한은 “노동동맹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세운 정치조직체”로 동기구의 성격을 규정

○ 현재 박성철, 양형섭, 유미영, 강연학, 여원구, 윤기복 등이 공동의장

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 1960.4.19 직후 분출된 남한의 통일논의를 대남전략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결성

- 대남통일전선 형성, 남북회담업무 전반을 주관

○ 1991년 허담 사망이후 위원장 공석

- 김용순, 양형섭, 임춘길, 안경호, 오익제 등 10여명이 부위원장으로 활동

③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 남한내 지하당조직으로 선전하고 있는 흑색선전기구로 1985년 기존의 「통일혁명당」을 개칭한 것

- 남한내 일부 좌경세력에 대한 이념적 지도 임무를 담당

④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

○ 1994년 아·태지역 미수교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설립

- 최근에 와서는 남북간의 각종 민간교류와 경협업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당 대남담당 비서 김용순이 위원장

⑤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 1998년 「8.15대축전」 제의에 앞서 결성

-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98.4)에서 언급된 “은 민족의 접촉·대화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 역할 수행

○ 사회민주당위원장 김영대가 회장

⑥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 1998년 「광명성경제연합회」를 개칭한 것으로 남한 기업들과의 교역, 각종 임가공 사업, 투자유치 사업 등 담당

○ 1998년 이후 현재 정운업(59세)이 총대표로 책임자 역할 수행

⑦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 1990년 제1차 「8.15 범민족대회」 개최 직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사무국 : 동경) 결성

-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 주장을 대변하는 친북 반한 통일전선 전위기구 역할 수행

○ 「범민련」 북측본부는 1991.1 결성

- 의장은 백인준 사망(2000.1) 이후 공석

【 통일 의 원칙 · 방안 】

■ 조국통일 3대 원칙

- ① 자주 ② 평화통일 ③ 민족대단결
* 7.4 남북공동성명('72년)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 ① 민족대단결로 자주, 평화, 중립적 통일국가 창립
 - ② 민족애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단결
 - ③ 공존·공영·공리 도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인정 및 존중
 - ④ 모든 형태의 정쟁중지, 외세의 침략에 공동대처
 - 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가지고 신뢰하고 단합
 - 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서로 다른 주의주장에 대한 배척 중지
 - 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보호 및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할 것을 장려
 - ⑧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해 전민족의 단합
 - ⑨ 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연대성 강화
 - ⑩ 민족대단결과 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93.4.7)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변천과정

연 대	내 용
'60년대	○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통해 통일실현, 총선불가능시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연방제 실시('60.8.14. 김일성 연설) - 당분간 남북의 현 정치제도 유지, 독자적 활동 보장
'70년대	○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연방제 실시 및 UN 가입 주장('73.6.23. 김일성 연설) -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대민족회의 소집
'80년대	○ 사상·제도를 상호 인정·용납한 기초위에서 남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주장('80.10.10. 제6차 당대회)

※ 199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기존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국가연합적 요소를 가미, 점진적인 연방제 완성을 주장('91년 김일성 신년사)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실현
 -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 후 중앙 정부의 기능을 강화 →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
 - 통일방도 화정을 위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 문제점
 - 연방구성 요건인 연방헌법 등에 관해 불언급
 - 군중집회성 회의인 정치협상회의 제의를 통해 당국간 직접대화 기피
 - 연방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남북대표 및 해외동포 참여를 주장, 인민회의제 도입 의도

※ 민족대단결 5대방침

- 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한 민족대단결
- ② 애국애족,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
- ③ 남북관계 개선(연북 화해정책으로 전환)
- ④ 외세의 지배와 간섭배제,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 세력 반대투쟁(미군철수)
- ⑤ 남북해외 온민족의 내왕접촉과 대화발전 및 연대연합 강화

* 김정일 서한('98.4.18)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

구 분	한 국	북 한
명 칭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연방제통일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통일주체	민족구성원 모두	프로레타리아 계급
전제조건	없 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통일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 1민족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	중간과정없이 통일국가 수립 * 다만 '90년대 들어서 잠정 적으로는 지역적 자치정부 에 더 많은 권한 부여.장차 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 여나가자는 주장
	민족공동체 건설 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국가체제조립 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 체제	명칭및 성격 「남북연합」	없음
	구성 방법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헌장」 채택, 남북연합기구 구성·운영	없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 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 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자주적·평화적·중립적 통일국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 주요 대남제의 】

일 시	내 용
'48. 3.25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소집 제의 (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4.30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 및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 제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49. 6.28	입법기관 구성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등 8개항의 통일방안 제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
'50. 6. 7	남북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소집 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6.19	전조선 입법기관 구성 제의 (최고인민회의)
'54. 4.27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에 대한 3개항의 통일방안 제의 (외무상 남일)
6.15	남북조선 군축 및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 체결 제의 (외무상 남일)
10.30	남북 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와 국회 합동회의 소집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
'55. 8.14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극동회의 소집 제의 (「8.15」 경축대회, 김일성)
'56. 4.28	남북조선의 정권당국간 무력불행사 선포 제의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7. 3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제의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
11. 7	남북당국간 군비축소 회담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
'57. 1.31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간의 정기 서신교환 제의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홍명희)
6.10	국제체육대회 단일 조선민족팀 구성 제의 (조선올림픽위원회)
9.20	남북조선대표참가 유관국 회의 소집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김일성)

일 시	내 용
'57.12.18	제17차 국제올림픽대회에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 제의 (조선올림픽위 위원장 홍명희)
'59.10.26	평화통일문제 토의를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 부수상 남일)
10.27	남북경제발전 및 교류상설위원회 설치 제의 (최고인민회의)
'60. 4.27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소집 제의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8.14	남북 연방제 제의 (김일성)
11.22	남북 경제·문화교류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
'62. 6.21	남북조선 정권 당국자 무력불행사 협정체결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
7.28	제18차 동경올림픽대회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을 위 한 체육회담 제의 (조선올림픽위원회)
11.28	남북조선올림픽위 대표회담 로잔느에서 개최 제의 (조선올림픽위 위원장 홍명희)
'63. 3.29	남북조선올림픽위 대표회의 제의 (조선올림픽위 위원장 홍명희)
9. 8	남북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
'64. 3.27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또는 남북 조선 각계대표의 접촉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 회의)
'67. 1. 4	남조선 당국자와 통일문제 조건부 협상 제의 (김일성)
8.21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유관국회의 소집 제의 (정부)
'71. 4.12	평화통일 8개방안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외무상 허담)
'72.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 (부수상 박성철)
12. 4	남북간 다방면적 합작 제의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대리 박성철)

일 시	내 용
'73. 4. 5	남북평화협정 체결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총리 김일)
6.23	조국통일 5대강령 제시 (김일성)
'74. 3.20	조·미 평화협정 체결 위한 회담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77. 1.25	남북정치협상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실무회의 소집제의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2. 8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 (인민군 부총참모장 김익현)
'79. 1.23	전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남북회담 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1.31	남북상호비방·중상 중지조치 제의 (조선중앙통신사)
2. 5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남북연락 대표 접촉 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2.20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통일팀 출전을 위한 남북탁구협회대표회담 제의 (조선체육지도위 위원장 및 조선탁구협회 회장)
12.20	제22차 올림픽대회 남북 민족유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인대표회담 제의 (조선체육지도위 위원장 김유순)
'80.10.1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 (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
'81. 1.1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 비접촉 제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82. 2.10	남과 북, 해외의 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소집 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83. 1.18	남북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제의 (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9. 9	연방국가의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에 남북공동의장 및 공동위원장 선출, 운반제 운영 제의 (김일성)
'84. 1.10	남·북 및 미국 3자 회담 제의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일 시	내 용
'84. 3.30	제23차 올림픽대회와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 유일팀 공동출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조선올림픽위 위원장 김유순)
9. 8	남조선 수재민구호물자제공 제의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85. 1. 9	남북 부총리 접촉 제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
4. 9	남북국회회담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회의)
5.28	남북적십자예술단 상호방문 제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86. 1.11	남북 상호 군사연습 중지 제의 (외교부)
6. 9	남·북·미국 3군사당국자 회담 제의(인민무력부장 오진우)
6.23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 협상 제의 (정부)
12.30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김일성)
'87. 7.23	조선반도에서 단계별 다국적 무력감축협상 제의(정부)
11.11	민족단합방안 5개항 제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연합회의)
'88. 1. 1	남북연석회의 소집 제의 (김일성)
7.20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 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1. 7	조선반도 평화보장 4원칙 제시 (중앙인민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12.21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부경) 유일팀 출전을 위한 남 북체육회담 제의 (조선올림픽위 위원장 김유순)
'89. 1. 1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김일성)
5.31	남북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 제의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7. 9	남·북·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하는 전민족대회 소집 ('90.8.15) 제의 (조국평화통일위 위원장 허담)

일 시	내 용
'89. 9.28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 (조국평화통일위 부위원장 김영남)
11.30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3개항 실천조치 제의 (외교부)
'90. 1. 1	남북자유왕래 및 전면개방 실현 위한 남북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 제의 (김일성)
1.17	IPU총회(제84차) 남북단일대표단 구성 참가 제의 (의회 그루빠위 위원장 양형섭)
5.24	조국통일 5개방침 제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김일성)
5.31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제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6. 4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 제의 (제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8.1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제의 (범민족대회)
9.14	UN가입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제의 (총리 연형묵)
'91. 1. 1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제의 (김일성)
7.30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 (외교부)
'93. 4. 7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5.25	남북최고위급의 특사교환 제의 (정무원 총리 강성산)
'94. 4.11	전민족대단결 방도 모색을 위한 「민족대회」 소집 제의 (당·정·사회단체 연합회의)
6.17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 표명 (김일성, 「카터」 전 미대통령에게 의사전달)
'95. 3.29	8.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민간급접촉 제의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5.26	남한의 쌀재공 검토용의 표명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성록)
'98. 4.18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 발표(김정일 「서한」형식)
'99. 2. 3	남북고위급 정치회담 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 】

남북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선언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세화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육과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상봉은 가까운 4월중에 경위문제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북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철

박지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송호경

2000년 4월 8일

남 북 협 력

교류협력
인도지원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 교류 협력 】

■ 남북한 왕래

〈 북한방문 〉

(단위: 명)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1-3	계
방문인원	1	183	237	257	18	12	536	146	1,015	3,317	5,599	1,222	12,543

* 금강산 관광객 별도(2000.3.31현재 총 364항차 207,671명 관광)

〈 남한방문 〉

(단위: 명)

구분	'90	'91	'92	'93	'99	계
방문인원	291	175	103	6	62	637

■ 남북 교역

2000.3.31 현재(단위: 천달러)

연도	반입	반출	계	교역수지	비고
'89	18,655	69	18,724	△18,586	-
'90	12,278	1,188	13,466	△11,090	-
'91	105,719	5,547	111,266	△100,172	연평균 △122,700
'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93	178,167	8,425	186,592	△169,742	
'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95	222,855	64,436	287,291	*△169,414	
'96	182,400	69,639	252,039	*△127,016	
'97	193,069	115,270	308,339	*△133,049	
'98	92,264	129,679	221,943	*△40,629	
'99	121,604	211,832	333,437	*△53,929	
2000.1-3	36,342	39,625	75,967	*△16,926	
합계	1,502,515	674,521	2,177,036	*△1,150,902	

*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개념임

【 인도 지원 】

■ 대북지원 실적

(2000.4.30 기준)

기 간	'95.6~'98.2(32개월)	'98.3~'00.3(25개월)	'95.6~'00.4(58개월)
정부차원	2억 6,172만불(87%)	3,975만불(13%)	3억147만불(100%)
연 평균	9,815만불	1,835만불	6,237만불
민간차원	2,236만불(35%)	4,579만불(66%)	6,815만불(100%)
연 평균	839만불	2,113만불	1,410만불
계(정부+민간)	2억 8,408만불(78%)	8,554만불(23%)	3억6,962만불(100%)
연 평균	1억 653만불	3,948만불	7,647만불

■ 분야별 대북 지원

(2000.4.30 기준)

기 간	일반구호	농업개발	보건의료	계
'95.6~'98.2	28,009만불(98.6%)	210만불(0.7%)	189만불(0.7%)	28,408만불(100%)
'98.3~'00.4	3,868만불(45.2%)	4,350만불(50.9%)	336만불(3.9%)	8,554만불(100%)
계	31,877만불(86.3%)	4,560만불(12.3%)	525만불(1.4%)	36,962만불(100%)

■ 정부·민간 대북지원 실적비교

(2000. 4. 30 기준)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95	2억 3,200만불(1,850억원)	25만불(1.9억원)
	쌀 15만톤	담요 8천매
	직접 지원	국제 적십자사 경유
'96	305만불(24억원)	155만불(12.4억원)
	CSB, 분유, 기상자재	밀가루, 분유, 식용유
	UN기구 경유	국제 적십자사 경유
'97	2,667만불(240억원)	2,056만불(182.1억원)
	CSB, 옥수수, 분유, 보건의료 등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UN기구 경유	국제 적십자사/남북적십자 경유
'98	1,100만불(154억원)	2,085만불(275.3억원)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비료, 한우, 컷소, 비닐, 분유, 설탕 등
	UN기구 경유	남북적십자 경유
'99	2,825만불(339억원)	1,863만불(223.6억원)
	비료 11.5만톤	밀가루, 옥수수, 약품, 비료 4만톤 등
	직접지원	대한적십자사/창구다원화(2.10~)
'00	50만불(6억원)	631만불(76억원)
	의료장비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UN 기구 경유	대한적십자사/창구다원화
계	3억 147만불(2,613억원)	6,815만불(771억원)
	옥수수기준 188만톤	옥수수기준 43만톤
총계	3억 6,962만불(3,384억원, 옥수수기준 231만톤) * 국제사회 11억 1,832만불(한국 제외)	

【 이산가족 】

■ 실태

○ 현재 남한거주 이산가족은 약 767만명으로 추정

- 이 중 이산1세대는 123만명이며, 6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은 약 69만명, 70세 이상은 26만명

* 가호적 신고자 546만명 기준, '71~' 96간 인구증가율(40.34%)을 감안한 추정치

■ 성사현황

단위:건

연도별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 상봉	방북상봉
'90	35	44	6	
'91	127	193	11	
'92	132	462	19	
'93	221	948	12	
'94	135	584	11	
'95	104	571	17	
'96	96	473	18	
'97	164	772	61	
'98	377	469	108	1
'99	481	637	195	5
2000.4	161	390	53	1
계	2,033	5,543	511	7

【 북한이탈주민 】

■ 총괄

구분	'89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4.30	총 입국자	사망	이면	국내 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5	71	148	69	1,163	182	34	947

■ 성별현황

성별	'89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총계
남	563	9	9	6	8	48	35	43	56	53	90	40	960(82.6%)
여	44	0	0	2	0	4	6	13	29	18	58	29	203(17.4%)

■ 거주현황

거주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수용	총계
인원	473	227	63	16	1	36	11	12	5	23	4	76	947
비율	49.9	24	6.7	1.7	0.1	3.8	1.2	1.3	0.5	2.4	0.4	8.0	100%

■ 직업별현황

직업	회사원	연구원	자영업	학생	유아	고령	무직	수용	총계
인원	155	16	87	71	16	306	220	76	947
비율	16.4	1.7	9.2	7.5	1.7	32.3	23.2	8.0	100%

* 고령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

주요인물 약력

당 (12명)

최고인민회의 (9명)

내각 (13명)

군 (11명)

기타 (11명)

■ 당(12명)

- 김정일(당총비서, 국방위원장)
- 강관주(대외연락부장)
- 강현수(평양시당 책임비서)
- 계응태(당비서:공안담당)
- 김경희(당중앙위원)
- 김국태(당비서:간부담당)
- 김기남(당비서:선전담당)
- 김용순(당비서:대남담당)
- 김중린(당비서:근로단체담당)
- 연형묵(국방위 위원, 자강도당 책임비서)
- 전병호(국방위 위원, 당비서:군수담당)
- 한성룡(당비서:경제담당)

■ 최고인민회의의(9명)

- 최태복(의장, 당비서:교육담당)
- 김영남(상임위원장)
- 김영대(상임위 부위원장, 사민당위원장)
- 김영주(상임위 명예부위원장)
- 김윤희(상임위 서기장)
- 박성철(상임위 명예부위원장)
-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 여원구(부의장)
- 장 철(부의장)

■ 내각(13명)

홍성남(총리)
곽범기(부총리)
조창덕(부총리)
강정모(무역상)
김병률(중앙재판소장)
김영일(육해운상)
김용삼(철도상)
박명철(체육지도위원장)
백남순(외무상)
백학림(인민보안상, 국방위 위원, 차수)
신태록(전기석탄공업상)
이하섭(농업상)
최영림(중앙검찰소장)

■ 군(11명)

조명록(총정치국장, 국방위 제1부위원장, 차수)
김영춘(총참모장, 국방위 위원, 차수)
김일철(인민무력상, 국방위 위원, 차수)
이을설(호위사령관, 국방위 위원, 원수)
김철만(제2경제위원장, 국방위 위원)
박기서(평양방어사령관, 차수)
박재경(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대장)
현철해(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대장)
원응희(보위사령관, 대장)
김두남(금수산기념궁전 관장, 대장)
오극렬(당 작전부장)

■ 기타(11명)

강영섭(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장)

김영성(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참사)

박관오(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박태화(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송호경(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안경호(조평통 서기국장)

양만길(평양시 인민위원장)

유미영(천도교청우당 위원장)

장 응(체육지도위 부위원장, IOC 위원)

장재언(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천연옥(「여맹」 중앙위원장)

김정일(金正日)



- 현 직 국방위 위원장, 당 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
당 중앙위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42.2.16 하바로프스크(소련명:유라)
양강도 백두산밀영(삼지연) 출생 주장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45.11 소련에서 귀국
- 1949. 9 생모 김정숙 사망
- 1950.-52 중국 길림학원(6.25 당시 자강도 장자산 피신 주장)
- 1964. 6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
- 1965. 김일성 인도네시아 방문시 동행
- 1967. 당 선전선동부 과장
- 1969.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 1971. 당 문화예술부 부장
- 1973. 9 당 중앙위 비서(조직 및 선전담당) 겸 조직지도부 부장,
3대혁명소조운동 총책임자(제5기 제7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 1974. 2 당 정치국 위원(1974년부터 "친애하는 동지",
"당중앙"으로 호칭)
- 1975. 2 공화국영웅 칭호
- 1980.10 당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
- 1983. 6 중국 비공식 방문
- 1990. 5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 1991.12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제6기 제1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 1992. 4 공화국 원수
- 1993. 4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 1997.10 당 총비서 추대(당중앙위와 당중앙군사위 공동명의)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장(재추대)

○ 주요저작

- 저서

- '73. 4.11 영화예술론
- '90.11.30 무용예술론
- '91. 5.21 건축예술론
- '91. 7.17 음악예술론
- '91.10.16 미술론
- '92. 1.20 주체문학론

- 논문

- '82. 3.31 주체사상에 대하여
- '92.10.10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94.11. 1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 '95. 6.19 사상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 담화·연설·서한(김일성 사후분)

- '94.10.16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95. 9.21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 '96. 8.24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 '97. 6.19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 '97. 8.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 '98. 4.18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 '00. 1.27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 개조 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강관주 : 일명 강주일



○ 현 직 당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부장
「조평통」 부위원장,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0. 7. 5 평남 대동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9. 3 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 1990. 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1997. 2 당 사회문화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강현수(康賢洙)



○ 현 직 평양시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19. 평남

○ 학 력 중앙당학교, 김일성종합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4. 3 평양시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 위원장
- 1982. 6 당 중앙위 검열위 제1부위원장
- 1989. 4 황해북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 위원장
- 1991.12 평양시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 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계응태(桂應泰)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공안담당)
당 정치국원,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25. 2.25 평남 평원
- 학 력 남만주대학, 소련 고급당학교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6.12 정무원 부총리
- 1977. 1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무역부장
- 1977.12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 1981. 5 정무원 경공업 위원장
- 1985. 8 평안남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장
- 1986. 2 당 비서국 비서(공안담당)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김경희(金敬姬)



- 현 직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46. 5.30 평양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5. 당 중앙위 국제부 1과 과장
- 1984. 2 당 중앙위 부부장
- 1988.11 당 중앙위 위원(보선), 당 경공업부 부부장
- 19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 1995. 당 경제정책검열부장
- 1997. 7 당 경공업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김국태(金國泰)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간부담당)
당 간부부장,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겸 자격심사위원장
- 출 생 1924. 함북 청진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회담경력

○ 학 · 경력

- 1984. 8 당 교육부 부장
- 1985. 6 당 간부부 부장
- 1992.12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간부담당)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기남(金基南)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선전담당)
당 선전선동부 부장,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26. 8 강원 원산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 1987. 9 당 중앙위 제1부부장
- 1989.12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장
- 1992.12 당 비서국 비서(선전담당)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김용순(金容淳)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당 중앙위 위원
아·태평화위원장, 「조평통」 부위원장
조선반핵평화위원장,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4. 7. 5 평남 평원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회담경력 1994. 6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단장

○ 주요경력

- 1988.11 당 중앙위 국제부 부장
- 1990. 5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국제담당)
- 1990. 6 세계인민과의 연대성위원회 위원장
- 1991. 7 조·일우호친선협회 최고고문
- 1992. 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 1992.12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 1993. 4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위원장, 「조평통」 부위원장
- 1994. 7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김중린(金仲麟)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근로단체담당)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24. 평북 벽동
- 학 력 중앙당학교, 소련 고급당학교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0.11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 1978. 1 당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겸 통일전선부 부장
- 1990. 1 당 비서국 비서(근로단체담당)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연형묵(延亨默)



- 현 직 자강도당 책임비서, 국방위 위원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1.11. 3 함북 경원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체코 프라하공대
- 회담경력 1990.9~1992.9 고위급회담 북측단장
 (1-8차)

○ 주요경력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 1986.12 당 비서국 비서
- 1988.12 정무원 총리
- 1992.12 정무원 총리 해임,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강등,
 자강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 위원장
- 1993. 4 중앙인민위 위원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전병호(全炳浩)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군수담당), 당 군수
 공업부장,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국방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26. 3.20 함북 무산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6.12 당 비서국 비서(군수담당)
- 1988.11 당 정치국 위원(보선)
- 1990. 5 국방위원회 위원, 당 군수공업정책검열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한성룡(韓成龍)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경제담당)
당 정치국원,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겸 예산위원장
- 출 생 1923. 함북 명천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8.11 당 정치국 후보위원
- 1988.12 당 비서국 비서(경제담당)
- 1990. 5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 1994. 3 당 중앙위 경제정책검열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예산위원회 위원장

최태복(崔泰福)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의장, 제10기 대의원
당 비서(교육담당)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30.12. 6 남포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 라이프치히공대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6.12 당 중앙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교육담당)
- 1990. 5 당 정치국 후보위원
- 1992. 1 당 과학교육부 부장
- 1992.12 당 비서국 비서(국제담당) 및 당 국제부 부장
- 1993. 4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 위원장
- 1993.12 당 비서국 비서(교육담당), 당 과학교육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김영남(金永南)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당 정치국원,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28. 2. 4 평양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외교학전공)
- 회담경력 1991.10 제46차 UN총회 참석
이상옥 외무장관과 면담

○ 학 · 경력

- 1974. 6 당 정치국 후보위원
- 1974. 9 중앙인민위 대외정책위 위원
- 1975. 2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 1983.12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 부장
- 1989. 9 「조평통」 부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 일명 김영호



- 현 직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제10기 대의원 겸 상임위 부위원장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범민련」북측
본부 부의장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91. 7 조·일 우호친선협회 부회장
- 1998. 6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8 사회민주당 위원장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金英柱)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제10기 대의원
당 정치국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0, 평남 대동군
- 학 력 모스크바종합대학(정경학부)
모스크바 고급당학교 연구반
- 회담경력 1972. 5 이후락 중정부장과 2회 회담
1972.7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 주요경력

- 1966.10 당 중앙위 정치위 후보위원 겸 비서국 비서
- 1970.11 당 중앙위 위원, 정치위 위원 겸 비서국 비서
- 1974. 2 정무원 부총리
- 1993.12 국가 부주석, 중앙인민위 위원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김윤혁(金潤赫)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26, 평남 양덕
- 학 력 김책공대, 레닌그라드공대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2.11 황해남도 경제지도위 위원장
- 1986. 6 중앙자재총련합상사 총사장
- 1986. 8 정무원 제1부총리
- 1986.12 정무원 부총리 겸 건설건재공업위 위원장
- 1988. 2 정무원 건설건재위 위원장 해임
- 1990. 5 정무원 부총리 유임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박성철(朴成哲)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제10기 대의원, 당 정치국원 「조국전선」 공동의장
- 출 생 1913. 9. 2 경북 경주
- 학 력 일본 상지대
- 회담경력 1972. 5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대리 박대통령과 면담(서울)
1972.10~ 73.6 남북조절위 공동위 회의 (1-3차) 위원장 대리, 조절위 본회담 (1-3차) 북측단장

○ 주요경력

- 1961. 5 「조평통」 당 중앙위 위원
- 1967.12 내각 부수상 겸 의상
- 1976. 4 정무원 총리
- 1977.12 국가 부주석, 중앙인민위 위원
- 1991. 8 「조국전선」 중앙위 공동의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양형섭(楊亨燮)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조국전선」 공동의장 「조평통」 부위원장, 조선사회 과학자협회 위원장
- 출 생 1925.10. 1 함남 함흥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경제학부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9.11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 19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 1997.12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여원구(呂鴛九)



○ 현 직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제10기 대의원
「조국전선」 중앙위 공동의장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9. 1 교포사업총국 부국장
- 1998. 2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1998. 4 「조국전선」 중앙위 공동의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장 철(張 澈)



○ 현 직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제10기 대의원
당 중앙위 위원,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
책위원장, 조선 김정일화연맹 위원장

○ 출 생 1926. 3. 1 경북 의성

○ 학 력 일본 명치대학 정경학부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6. 5 정무원 문화예술부 부장
- 1988. 3 당 중앙위 위원(보선)
- 1989. 8 「조평통」 부위원장
- 1990. 5 정무원 부총리 겸 문화예술부 부장
- 1994.12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 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 1998.11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홍성남(洪成南)



- 현 직 내각 총리, 제10기 대의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9.10. 2 평북 정주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체코 프라하공대(기계공학 전공)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5. 9 정무원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 1986. 2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 위원장
- 1986.12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정무원 제1부총리
- 1989.11 당 정치국 후보위원
- 1990. 5 정무원 부총리
- 1997. 2 정무원 총리대리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내각 총리

곽범기(郭範基)



- 현 직 내각 부총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91. 1 기계공업부 제1부부장
- 1993. 2 기계공업부 부장
- 1993.12 당 중앙위 후보위원
- 1996. 4 경제대표단 인솔 나이지리아 방문
- 1998. 7 나이지리아 방문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내각 부총리

조창덕(趙昌德)



○ 현 직 내각 부총리, 제10기 대의원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 | |
|---------|-----------------|
| 1969 | 광업성 부상 |
| 1976. 9 | 광업위원회 위원장 |
| 1980.10 | 당 중앙위 위원 |
| 1986.12 | 채취공업위원회 위원장 |
| 1994. 7 | 당 중앙위 후보위원 |
| 1998. 7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 1998. 9 | 내각 부총리 |
| 1999. 4 |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 |

강정모(姜正模)



○ 현 직 무역상

○ 출 생 1934.11.13 강원 홍천

○ 학 력 평양건설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 | |
|---------|---------------|
| 1960. 9 | 평양건설사업소 설계원 |
| 1981.10 | 동독주재 참사관 |
| 1985. 2 | 무역부 제1부부장 |
| 1992.12 |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
| 1993.11 | 독일주재 이익대표부 대표 |
| 1998. 9 | 무역상 |

김병률(金炳律)



- 현 직 중앙재판소장,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겸 법제위 위원
- 출 생 1926. 평북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 회담경력

○ 학 · 경력

- | | |
|---------|-------------------------|
| 6.25당시 | 김일성 호위무관 |
| 1969.11 | 평북도당 책임비서 |
| 1970.11 | 당 중앙위 위원 |
| 1974. 9 | 평안북도 인민위원장 |
| 1986.12 | 중앙인민위 위원 |
| 1994. 1 | 호위사령부 정치위원 |
| 1995.10 | 인민군 대장 |
| 1998. 7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 1998. 9 | 중앙재판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

김영일



- 현 직 육해운상
제10기 대의원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 | |
|---------|-----------------|
| 1995.11 | 해운부 부장 |
| 1998. 7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 1998. 9 | 육해운상 |

김용삼



- 현 직 철도상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 학 · 경력

- | | |
|---------|----------------|
| 1982. 2 |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
| 1986.11 |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
| 1987. 3 | 북부철도 총국장 |
| 1988. 9 | 개천철도국 총국장 |
| 1998. 9 | 철도상 |

박명철(朴明哲)



- 현 직 내각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41. 9.15 평북 의주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 | |
|---------|------------------|
| 1991. 5 |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
| 1992.12 | 당 중앙위 후보위원 |
| 1992.12 | 국가체육위원장, 조선바둑협회장 |
| 1993. 4 |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 1998. 7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 1998. 9 | 체육상 |
| 1999.11 | 내각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

백남순 : 일명 백남준



- 현 직 외무상,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29. 3.13 경기 수원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 회담경력 1972.8 적십자회담 자문위원(1-7차)
1989.2 고위급예비회담 북측단장(1-8차)
1990.9 고위급회담 대표(1-8차)
1992.3 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장
1994.6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대표

○ 주요경력

- 1974. 4 폴란드 주재 대사
- 1985. 5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 1991. 1 「조평통」서기국장,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1992. 1 조선반핵평화위 부위원장
- 1996. 1 「조국전선」 서기국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외무상

백학림(白鶴林)



- 현 직 인민보안상, 인민군 차수, 국방위 위원
당 정치국위원,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 출 생 1918. 평남 평원
- 학 력 소련 군사아카데미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8. 8 인민무력부 부부장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군사위 위원
- 1985. 4 인민군 대장
- 1985.10 당 정치국 위원 해임, 정무원 사회안전부 부장
- 1992. 4 인민군 차수, 공화국 2중영웅 칭호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00. 4 인민보안상

신태록(申泰祿)



- 현 직 전기석탄공업상, 당 중앙위 후보위원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5. 4 광업위원회 부위원장
- 1981. 5 석탄공업부장
- 1982.11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지배인
- 1986. 2 당 중앙위 후보위원
- 1998. 9 전기석탄공업상

이하섭(李河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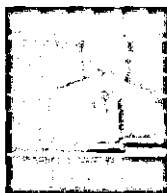


- 현 직 농업상,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9. 함남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4.12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 1986.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 1990. 7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농산물무역총회사 위원장
- 1998. 7 농업위원회 위원장 대리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농업상

최영림(崔英林)



- 현 직 중앙검찰소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겸 법제위 위원
- 출 생 1929. 양강도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4. 2 정무원 제1부총리
- 1985.10 당 정치국 위원, 제1부총리 해임
- 1990. 5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
위원장
- 1992.12 정무원 부총리 겸 금속공업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중앙검찰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위원

조명록(趙明祿)



- 현 직 인민군 총정치국장, 인민군 차수
국방위 제1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0. 만주 연길
- 학 력 만주 비행학교, 소련 공군대학
중앙당학교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군사위 위원
- 1992. 4 인민군 대장
- 1995.10 인민군 차수
- 1995.10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영춘(金英春)



- 현 직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군 차수
국방위 위원,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6.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6.12 당 중앙위 위원
- 1992. 4 인민군 대장
- 1995.10 인민군 차수
- 1995.10 인민군 총참모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김일철(金鎰喆)



- 현 직 인민무력상, 인민군차수, 국방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3. 평양
- 학 력 해군대학
소련해군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5. 5 인민군 상장
- 1992. 4 인민군 대장
- 1997. 4 인민군 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상

이을설(李乙雪)



- 현 직 호위사령관, 인민군 원수, 국방위 위원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21. 함북 성진
- 학 력 소련군사아카데미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5. 3 함경남도당 위원장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군사위 위원
- 1982.10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 1983. 8 평양방어사령부 사령관
- 1984. 8 호위총국 총국장
- 1990. 5 국방위원회 위원
- 1995.10 인민군 원수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김철만(金鐵萬)



- 현 직 제2경제위원장, 국방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18. 평남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65. 1 인민군 제2군단장
- 1968. 2 인민군 상장, 인민군 부총참모장
- 1970. 7 인민군 제1부총참모장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 1989. 인민군 대장, 군수동원총국장
- 1989.12 제2경제위원장
- 1990. 5 당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박기서(朴基瑞)



- 현 직 평양방어사령관, 인민군 차수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29.
- 학 력 소련군사아카데미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6. 2 당 중앙위 위원(보선)
- 1989.11 인민군 상장
- 1992. 4 인민군 대장, 김일성훈장 수훈
- 1995. 3 당 중앙군사위 위원
- 1996.10 평양방어사령관
- 1997. 4 인민군 차수

박재경



- 현 직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3. 6.10 함북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5. 2 총정치국 선전부장(인민군 소장)
- 1993.12 당 중앙위 후보위원(보선)
- 1994. 6 인민군 상장
- 1994. 9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 1995. 8 당 중앙위 후보위원
- 1997. 2 인민군 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현철해(玄哲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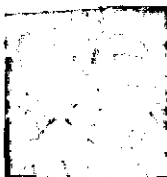


- 현 직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4. 8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루마니아 유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68.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인민군 소장
- 1986. 인민군 중장,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
- 1992. 4 인민군 상장
- 1993.12 당 중앙위 위원
- 1995.10 인민군 대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원응희(元應熙)



- 현 직 보위사령관,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9.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8. 3 당 중앙위 후보위원
- 1990. 공군사령부 정치위원
- 1990. 인민무력부 보위국장
- 1991.12 당 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 1992.-93. 인민군 총참모부 보위국장
- 1994. 7 인민군 대장
- 1995.12 보위사령관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김두남(金斗南)



- 현 직 금수산기념궁전 관장,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30. 평양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강건군관학교
소련군사아카데미학원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0.11 당 중앙검사위 위원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군사위 위원
- 1982. 8 당 정치국 후보위원
- 1982.10 당 중앙위 군사부 부장
- 1985. 4 인민군 대장, 김일성 군사보좌관
- 1994. 7 김정일 군사보좌관
- 1996. 3 금수산기념궁전 관장

오극렬(吳克列)



- 현 직 당 작전부 부장, 당 중앙위 위원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1. 중국 길림성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 프룬제군사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7.11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의원
- 1979. 9 당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군 총참모장
- 1980.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군사위 위원
- 1982. 4 중앙인민위 위원, 김일성훈장 수훈
- 1985. 4 인민군 대장
- 1988. 4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해임
- 1989. 7 당 중앙위 작전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강영섭(康永燮)



- 현 직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제10기 대의원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
- 출 생 1931.10.15 평양(평남 대동 설)
- 학 력 레닌그라드종합대학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9. 2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 위원장
- 1989. 5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 19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 1990.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위원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김영성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참사,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아
태평화위 참사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1998. 3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대표(북경) 등

○ 주요경력

- 1992. 5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수행
- 1992. 5 남북경제공동위 위원
- 1992. 7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제6-7차)
- 1992. 9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기간중 교류협력
분과위원장간 접촉 대표
- 1999. 8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1999.10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 1999.11 「아·태평화위」 참사
- 2000. 4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북측단장

박관오(朴寬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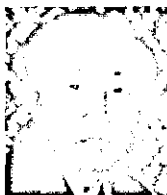


- 현 직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제10기 대의원 겸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위원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1989. 5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남북회담 대표

○ 주요경력

- 1978. 2 원자력국가위원회 부위원장
- 1981. 1 원자력연구소 소장
- 1987. 1 김일성종합대 총장
- 1991. 1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법제위원회 위원

박태화(朴泰和) : 일명 박태호



- 현 직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선사, 조선종교인협회 부회장
제10기 대의원 겸 상임위원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출 생 1919.10.15 함북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79. 9 불교도연맹 위원장
- 1989. 5 조선종교인협의회 부위원장
- 1990.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
- 1991. 1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
- 1991. 7 조-일 우호친선협회 부회장
- 1993. 8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송호경(宋虎景)



- 현 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부위원장
북·일우호친선협회 회장
당 중앙위 부부장
- 출 생 1941. 2. 3 평남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 회담경력 2000.3 북경 비공개접촉 북측단장

○ 주요경력

- 1982. 6 유엔식량기구(FAO) 상임대표
- 1992. 8 외교부 부부장 해임, 당 국제부 부부장
- 1994. 1 정무원 외교부 부부장
- 1996. 5 당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 1996. 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1997. 북·일 우호친선협회 회장

안경호 : 일명 안병수



- 현 직 「조평통」 서기국장, 「범민련」 북측
본부 부의장, 제10기 대의원
- 출 생 1930. 1.18 강원
- 학 력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박사
- 회담경력 1973.12 남북조절위 제1-9차 부위원
장회의 수행원
1990. 9 고위급회담 대표(1-8차), 대변인
1988. 8 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
1994. 6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
급 예비접촉 대표

○ 주요경력

- 19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 1990.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위원
- 1990. 7 콘크리트장벽제거 남북자유내왕 및 전면개방을 위한
공동추진위 북측 부위원장
- 1991. 1 「조평통」 부위원장
- 1995. 8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9. 4 「조평통」 서기국장

양만길



- 현 직 평양시 인민위원장, 제10기 대의원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90. 2 국가계획위원회 행정조직국장
- 1993. 3 황북도 행정경제위원장
- 1994. 5 황북도 행정경제위원장 해임
- 1996. 2 평양시 행정경제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유미영(柳美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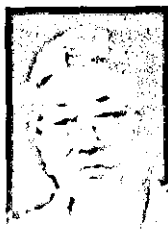


- 현 직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제10기 대의원 겸 상임위 위원
- 출 생 1921. 1. 7 서울
- 학 력
- 회담경력

○ 학 · 경력

- 1990. 3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
- 1991. 4 「범민련」 북측 중앙위원
- 1993.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 1994. 1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 1995. 8 조국통일상 수상
- 1995.10 개천절 기념 「단군제」 진행
- 1997. 9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장 응(張 雄)



- 현 직 내각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IOC 위원
- 출 생 1938. 7. 5 평양
- 학 력
- 회담경력 1989. 3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대표
- 1990.11 국제대회 단일팀 문제관련
체육회담(1~4차)대표
- 1991. 2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위원장

○ 주요경력

- 1976. 7 북한선수단 통역원으로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 참가
- 1981. 7 조선 올림픽위원회 사무차장
- 1985. 6 조선 올림픽위원회 서기장
- 1996. 7 IOC위원
- 1997. 1 국가체육위원회 대외사업국장
- 1998. 4 체육성 부상,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언(張在彦) : 일명 장재철



- 현 직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범민련」 북측
본부 부의장, 제10기 대의원
- 출 생
- 학 력
- 회담경력

○ 학 · 경력

- 1989. 1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 1989. 3 조선종교인협회 부회장
- 1991. 1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
- 1991. 7 조 · 일 우호친선협회 부회장
- 1992. 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 1994. 9 조선종교인협회의 회장
- 1994.12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 위원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12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천연옥(千延玉)



- 현 직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제10기 대의원 겸 상임위원
- 출 생 1945. 1.11
- 학 력
- 회담경력

○ 주요경력

- 1985. 8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 1985.11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 부위원장
- 1998. 4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부 록

북한 사회주의 헌법

남 북 기 본 합 의 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

-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1972.12.27)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1992.4.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정보출 (1998.9.5)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가치밀에 항일 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

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제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키시

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세계 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에 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룡성변명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

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

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분체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

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

회주의법률체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채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체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조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율

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안을 옹계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

의 높은 속도와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동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사회를 인대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

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

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

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
과 군중규율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
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
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
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
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
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
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
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
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
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
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
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
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
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
다. 이 권리는 종교전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
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
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
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
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
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
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
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
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
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
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

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 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재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재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 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신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 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

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 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 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

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적 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 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 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의는 1년에 1~2차 해당인민위원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

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의와 상급인민회의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

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 직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 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

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이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 채택

1992. 2.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

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공동군사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지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

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무원
국무총리 정원식 총리 연형묵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rows.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the memo content.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lines.